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미 국

연방법무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부동산위원회 개정안 거부

연방법무부는 뉴멕시코주 부동산위원회가 제출한 뉴멕시코주 행정규칙(administrative code)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뉴멕시코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서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는 자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관한 패키지 서비스나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만을 지불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현재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고객들과 협상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 판매자는 서면을 통해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이상 특정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만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부동산위원회가 가상 사무실 웹사이트(Virtual Office Websites; 이하 VOWs)를 광고로 정의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VOWs를 광고로 정의하는 뉴멕시코주가 정한 법규는 기존 중개업자들이 다른 수단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정보들을, VOWs를 운용하는 경쟁자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그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뉴멕시코주에서의 주택 판매자나 구매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토록 한다"고 J. Bruce McDonald 독점금지국 부국장은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적절한 매물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중개업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VOWs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VOWs는 암호화되어 있는 사이트로서,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의 중개업자들이 제공하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모든 중개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고객들에 대해 광고를 하지만, VOWs 자체는 광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법무부의 입장이다. VOW 중개업자들의 고객들은 그 중개업자들과 일정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VOW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뉴멕시코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어느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부동산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연방법무부는 VOWs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2005. 11. 2.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통신사업자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

연방법무부는 Verizon Communications Inc.(이하 Verizon)와 SBC Communications Inc.(이하 SBC)가 각각 MCI Inc.(이하 MCI)와 AT&T Corp.(이하 AT&T)의 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구간의 광네트워크 시설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초에 신고된 이번 거래는 Verizon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거대도시 지역과 SBC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1개 거대도시 지역에서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거래가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연방법무부가 우려하는 경쟁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화해안도 동시에 제출했다.

“연방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Verizon과 SBC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 내에 있는 기업고객들에게 경쟁으로 이익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고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말했다. “독점금지국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네트워크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결합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인 시내 및 시외 서비스, 인터넷 백본망 그리고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망들을 전부 조사했다. 그 결과 많은 빌딩들이 유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이번에 문제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부분들에서는 경쟁상의 문제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기술의 발전, 규제환경의 변화 및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등이 그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또한 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연방법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와 전 조사과정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Verizon과 MCI는 워싱턴-볼티모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탐파, 리치몬드, 버지니아,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포틀랜드 및 메인 등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수백 개의 빌딩들에 유선망을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이 없는 경우, 이번 기업결합은 이들 빌딩들에 대한 유선망의 설비 기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판단했다. 이들 유선망을 통해 이 지역 빌딩들에 대해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SBC에 대한 소장에 따르면, SBC와 AT&T는 시카고, 달라스-포트워스, 디트로이트, 하트포드-뉴헤븐, 커넥티컷, 인디애나폴리스, 캔사스 시티, 로스앤젤레스 등 11개 메트로폴리탄에서 유선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이 없는 경우, 이 지역들에서도 역시 설비 기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해안에서는 Verizon과 SBC는 각각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 지역에 있는 350개 이상의 빌딩들에 대한 접속을 처분하여, 각 도시별로 하나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통신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장기 임차를 하도록 했다.

조사의 일환으로, 독점금지국은 다양한 상품 및 지리적 시장을 고려했으며, 기업결합 당사회사들간의 중복되는 모든 분야들을 검토했다. 또한 케이블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의 경쟁도 고려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에서의 규제환경 변화 및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도 함께 고려했다.

Verizon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Bell 계열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 AT&T Corp.가 분할되어 7개의 회사로 나뉜 결과로 1984년에 나타난 회사들 중의 하나이다. Verizon은 지난 2004년에는 국내 유선 서비스 시장에서 약 386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MCI는 애쉬본에 본사를 두고 있으

며, 미국내 가장 큰 교환사업자이다. 2004년 수익은 207억 달러에 이른다. SBC는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에 본사가 있으며, 지역 Bell 사업자 중의 하나이다. 2004년에는 유선 서비스 사업으로 36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AT&T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가 본사이며, 교환사업을 하고 있다. 2004년 수익은 30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5. 10. 27. 연방법무부

반트러스트국, Sprint Corporation의 Nextel Communications Inc. 매수에 관한 심사종료에 대하여 발표

심사는 2개의 이동무선통신사업자의 합병이 경쟁을 감살시킬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금일 Sprint Corporation의 Nextel Communications Inc. 매수에 관한 심사종료를 발표한 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Sprint의 Nextel 매수안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였다. 사실에 따르면 Sprint와 Nextel의 합병은 동 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동 사들에게 시장력(market power)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동무선서비스의 구입자는 합병후에도 선택가능한 많은 경험을 계속해서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쟁

을 확보하기 위해 동 합병을 제소할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ALLTEL-Western Wireless와 Cingular Wireless-AT&T Wireless와의 합병에서는 자산양도를 명하고, 반트러스트법의 집행에 있어서 동 분야에서의 장래의 합병계획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반트러스트국은 심사에 있어서는 Sprint와 Nextel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 동 사들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었을 경우에 차세대 무선광대역서비스와 같은 개발중인 상품을 포함한 이동무선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트러스트국이 검토를 한 경쟁상의 손해에 관한 가설은 어느 것도 사실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트러스트국은 합병한 회사가 합병후 시장에서 일방적인 시장력(market power)을 행사하는 것 또는 합병한 기업과 그 밖의 나머지 사업자가 조정한 거래를 하는 경쟁상의 폐해가 일어날 것 같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무선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새로운 무선기술은 합병이 행해진 기업의 고객에게 대체수단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며, 합병기업에 의해 경쟁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수단에 의해 방지해야 한다」.

배경

반트러스트국은 Sprint Corpo-

ration(Sprint)의 Nextel Communications Inc.(Nextel) 매수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였다. Sprint는 가입자수 약 2,300만명을 가지는 미국 제3위의 무선통신사업자이다. Nextel은 가입자수 약 1,500만명을 가지는 미국 제5위의 무선통신사업자이다. 합병함에 따라 약 700억 달러의 자산가치를 가지며, 미국에서는 Cingular Wireless LLC 및 Verizon Wireless에 이어 제3위의 무선통신사업자가 된다. 또한 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의 계열외에서는 최대 통신사업자가 된다.

반트러스트국은 당해 합병계획이 2004년 12월 15일에 공표된 직후에 심사를 개시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방대한 전자정보를 포함하는 대량 정보를 Sprint, Nextel 및 추출된 제3자로부터 얻었다. 또한 반트러스트국은 경쟁하는 통신사업자, 고객, 무선설비공급자, 기술연합 및 현존하는 차세대무선광대역 기술제공자를 포함하는 50 이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하였다.

본 건 합병계획은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심사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심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FCC와 조정을 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의 심사는 push-to-talk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동무선 음성데이터 통신서비스 조항에서 합병계획의 잠재적 영향이 경쟁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다. 반트러스트국은 또한 2495MHz~

2690MHz대에서 Sprint와 Nextel이 소유하는 주파수대의 결합이 경쟁에 주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동무선음성·데이터 통신서비스의 분석에 있어서는 반트러스트국은 전체 미국내 다수의 지역에서 Sprint와 Nextel의 판매 경쟁상황의 정도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이동무선통신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신이 통상 어디에 소재하고, 어디로 이동하는가(자택, 근무처, 그 밖의 통상 방문하는 장소 및 그들 상호간)에 의해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역 및 지방 시장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동무선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수 및 독자성은 지리상의 구역에 있어서 다양하며, 서비스의 양 및 지리적 범위의 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두는 소비자의 구입 결정과 관련한 주요한 요소가 된다.

반트러스트국이 심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합병은 고객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을 가리키고 있다. 손해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트러스트국은 2개의 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의 넓이와 폭,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push-to-talk 서비스를 포함)의 특징 및 지역네트워크의 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긴밀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또한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는 선택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방대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반트러스트국은 합병기업이 일반적으로 시장력(market power)을 행사하여 경쟁에 해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통신회사로서는 보다 소규모인 지역통신회사와 마찬가지로 Cingular와 Verizon이라는 대규모통신사업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Sprint-Nextel사는 그들이 경쟁하는 각각의 지역시장에서는 합병후에도 강력한 경쟁자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과거의 고객선택은, Sprint와 Nextel은 가끔 몇몇 지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경쟁을 해왔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쟁통신사업자는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Sprint와 Nextel이 제공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유사한 대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반트러스트국은 또한 감소한 경쟁사업자에 의한 조정이 고객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러나 증거조사에서는 합병에 의해 그러한 조정이 일어나거나 또는 성공한다고 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Sprint-Nextel사는 2495MHz~2690MHz의 주파수대에서 최대의 면허보유자가 된다. 반트러스트국은 동 주파수대에서 합병에 의한 결합은 경쟁상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과거 이 대역(帶域)에서의 주파수는 무선케이블 및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도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용되지 않았다. FCC에서의

최근의 규제절차 결과 동 주파수대는 Sprint 또는 Nextel이 현재 이 주파수대를 이용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고정 또는 이동식 차세대 무선광대역서비스에 제공되는 것이 기대된다. 2개 회사의 면허 결합이 몇몇 곳에 소유의 집중을 증대시키지만 이것도 또한 장래에 전국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Sprint-Nextel사에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이 주파수대의 다른 부분 또는 무선광대역 서비스에 제공되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할지라도 모아진 방대한 증거는 동 합병계획에 의해 무선광대역서비스 제공에 의한 경쟁의 진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는 결론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트러스트국은 심사종료 성명 발표의 방침에 따라 동 성명을 발표한다. 심사에서 얻어진 일정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반트러스트국의 의무에 따라 이 성명은 한정적이게 되었다. 조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반트러스트국의 평가는 지금껏 사실과 현상에 특화된 것이며, 관련한 다수의 기초사실은 공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특정기업이 관여하는 결합, 활동 및 거래를 향후 어떻게 분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매우 광범위한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동 성명은 장래의 집행활동을 조금도 구속하지 않는다. 종료선언의 발표에 있어서 반트러스트국의

성명은 <http://www.usdoj.gov/atr/public/guidelines/201888.htm>에서 입수할 수 있다.

2005. 8. 3.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FTC, Novartis AG의 Eon Labs 취득을 인정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의약품(이하 'generic 의약품'이라 한다) 기업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자산을 양도하도록 명령하다.

FTC는 금일, 3개 generic 의약품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Novartis가 중복되는 의약품 3개 분야에 대해서 Amide Pharmaceutical Inc.에 자산양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사가 Eon Labs를 172만 달러에 취득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FTC와의 동의명령안에서의 조건에는 Novartis는 Eon 취득후 10일 이내에 Amide에 대해서 염산 데시프라민(desipramine 항울약), 구연산 orphenadrine ER(extended release) 및 rifampin 구강캡슐제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모두 양도하도록 요구되었다. 더욱이 Novartis는 Amide가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제조허가 승인을 얻을 때까지 Sandoz의 generic 의약품 부문을 통해서 Amide에 구연산 orphenadrine ER 및 염산 데시프라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FDA로부

터 필요한 모든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Amide를 지원하게 된다.

「합병계획은 3종의 generic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중대한 반경쟁적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FTC 경쟁국장 Susan Creighton은 언급했다. 「위원회의 명령은 합병이 없었다면 Eon이 제공했는지 모르는 경쟁을 해온 일류기업에 대해 자산양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구제(remedy)하는 것이다.

염산 데시프라민은 삼환계 항울약(tricyclic antidepressant)으로 미국에서 동 제품의 generic 의약품 판매액은 연간 약 600만 달러에 이른다. 근력강완제인 구연산 orphenadrine ER은 연간 1,000만 달러, 결핵치료에 이용되는 rifampin은 연간 1,400만 달러이다. 이러한 3가지 종류의 의약품에 있어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의약품의 평균가격은 generic 의약품에 비해 평균가격에서 2배 이상 가격차가 난다.

그러므로 generic 의약품의 제조자 간의 경쟁은 generic 의약품의 가격 설정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결과 위원회는 generic 의약품 분야는 거래의 영향에 대해서 반독점 분석을 하는데도 적당한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본 합병은 3개의 generic 의약품 각각의 경쟁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3 종류의 시장 모두에 있어서 Novartis와 Eon은 중요한 경쟁기업이다. 더욱이 관련한 모든 시장에 있어서 경

쟁사업자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염산 데시프라민의 generic 의약품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는 Watson Pharmaceuticals 뿐이지만 동사는 의약품 주요 6개 분야 중 3개 분야만 제조를 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구연산 orphenadrine ER 및 rifampin 시장에서는 Impax Laboratories와 VersaPharm이 각각의 generic 의약품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이지만 양 시장에서도 Novartis와 Eon이 전체 판매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FTC의 주장

FTC의 주장에 의하면 계획된 합병은 반경쟁적이며, FTC법 제5조 및 개정 클레이튼법 제7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구제(relief)가 없다면 동사의 합병은, Novartis와 Eon 간에 염산 데시프라민, 구연산 orphenadrine ER 및 rifampin에 있어서 generic 의약품 시장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을 배제하게 된다. 또한 합병은 Novartis가 일방적인 시장력(market power)을 행사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 밖의 나머지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상호 조정을 할 가능성도 증대시키게 되며, 그 어느 쪽이라도 이러한 3종의 의약품 각각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FTC는 더욱이 법적규제 및 기타 제한 때문에 신규진입이 합병안의 반

경쟁적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적시에, 적당하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동의명령

FTC의 동의명령은 Novartis의 Eon 취득에 의한 반경쟁적 영향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Novartis가 Eon을 취득한 후 10일 이내에 Amide에게 미국내에 있는 Eon의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염산 데시프라민의 제조 판매 자산 및 구연산 orphenadrine ER와 rifampin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FTC는, Amide는 약품제조 관련 자산을 취득하여 Novartis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동의명령에서는 Novartis는 Amide가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제조허가 승인을 얻을 때까지 Sandoz를 통해서 구연산 orphenadrine ER 및 염산 데시프라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도 요구하였다. 또한 Novartis는 Amide가 가능한 신속하게 상기 2종 약품의 제조 허가를 FDA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도 해야만 한다. Amide는 현재 계약에 근거하여 Novartis를 위한 rifampin을 제조하였고, 이미 수년간 경과했기 때문에 rifampin에 관한 기술이전 및 공급의무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FTC가, Amide는 이런 조건에 맞는 구매자가 아니거나 또는 양도방법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Novartis는 Amide와의 거래를 철회하고, FTC가 승인하는 구매자에게 6개월 이내에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만일 Novartis 6개월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경우 FTC는 자산양도를 받는 관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의 기타 다른 조건

명령은 또한 만일 공급의 곤란성 또는 승인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기술이전을 감시하고, Amide와 FTC를 지원하는 잠정적 관재인의 지명을 규정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Novartis는 염산 데시프라민, rifampin 및 구연산 orphenadrine ER에 대한 만족스러운 자산양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재인에 대해 관재인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FTC는 규제당국의 허가 및 의약품제조업자를 취득한 경험을 가진 Francis J. Civile를 잠정감시인으로 선출하고, Amide는 그의 임명에 동의하였다.

거래당사자

스위스 Basel에 본부를 둔 Novartis는 의약품 및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재 분야에서 세계 주도적인 기업이며, 세계 140개국에서 약 81,4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세계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제5위에 랭킹되어 있다. 2004년 동사는 전 세계에서 매출액 \$28.2billion, 순이익

\$5.8billion을 발생시켰다. 이전 Geneva에 소재한 Sandoz는 generic 의약품의 소매판매를 하는 Novartis의 자회사이다. 동사는 본부를 오스트리아 Vienna에 두고 있으며, 종업원은 110개국 13,400명이다. 2004년 동사는 30억 달러의 판매를 하였으며, 미국의 generic 의약품 기업에서는 제5위의 지위에 있다.

New Jersey Laurelton에 본부를 두고 있는 Eon은 미국 제9위의 generic 의약품 공급업자이다. 2003년 동사는 3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동사는 미국에서 2개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Laurelton(본부, 제조, 판매, 유통)에 있으며, 또 하나는 North Carolina, Wilson(연구개발, 제조, 유통)에 있다. 동사는 미국에서 531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다.

Novartis는 2005년 2월 20일자로 행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서 Santo Holding AG로부터 6,000만주를 17억 2,000만 달러의 현금으로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주수(株數)는 Eon의 공개원료주식의 약 67%를 의미한다. 더욱이 동사는 Eon의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 8억 9,700만 달러로 Eon주의 남겨진 희석주(diluted share) 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합의를 하였다.

2005. 7. 19. 연방거래위원회 발표문

EU위원회, 이탈리아 담배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해 벌금 부과

EU위원회는 이탈리아 담배 제조업자 4사에 대해 총 5천 6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담배 재배업자 및 중개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담합하고 공급자 할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EU조약 제81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번 위법행위자는 Deltafina, Dimon (Mindo의 전신), Transcatab 및 Romana Tabacchi이다. EU위원회는 또한 이탈리아 담배제조업자협회인 APTI와 담배재배업자단체인 UNITAB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에 관여한 혐의로 약간의 벌금을 부과했다.

“카르텔 문화가 농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뿌리 뽑혀야 한다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위원회는 스페인 담배 시장의 5개 제조업자들에게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탈리아가 유럽내 가장 큰 잎담배 제조국가이므로, 이번 결정은 보다 더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경쟁위원인 Neelie Kroes은 말했다.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선도적인 담배 제조업자들은 원재료에 구매 가격 및 공급자들에

대한 선택적인 할당 등에 관해 담합을 했다. 이들은 또한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담배 판매를 위한 경쟁매에서 입찰 담합을 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는 APTI와 UNITAB 간에 시즌 초마다 이른바 “재배계약”을 통해 최소가격을 정하는 협상을 했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담배 중개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담합하고 공급자 할당까지 하였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EU위원회가 통상적인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잎담배 시장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최저가격 설정에 관한 공동 협상을 인정하는 이탈리아 국내법은 APTI와 UNITAB간의 협상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위원회는 APTI와 UNITAB에 대해 각각 1000 유로씩의 벌금만 부과했다.

담배 제조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EU위원회는 Deltafina 3천만 유로, Transcatab 1천 4백만 유로, Mindo(Dimon) 1천만 유로 및 Romana Tabacchi 2백 5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2005. 10. 20. EU위원회

EU위원회, 스포츠용품사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규칙에 따라 핀란드의 겨울용 스포츠용품 제조 회사인 Amer그룹이 독일 Adidas-Salomon AG의 Salomon 사업부문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위원회의 승인에는 Salomon과 오스트리아의 스키 제조업체인 Fischer GmbH.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따를 경우, 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유럽 역내나 그 일부 지역에서 유효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스키 장비 산업에서의 합병은 가격 인상,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승인될 수 없다. 그러나 Amer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는 경우, 결합 기업은 여전히 겨울용 스포츠 장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말했다.

Amer는 Adidas Salomon 중에서 Salomon 사업 부분의 자산과 발행된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 두 회사는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및 그 부속 장비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Amer그룹은 이 시장에서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인 Atomic Austria GmbH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원래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및 영국 등 6개 EU회원국의 국내 기업 결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회원국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Amer에 의한 Salomon의 인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시장에서 심각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및 프랑스에서 더욱 그러했다.

Salomon과 Fischer는 세계적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제조업자로서, 1997년에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이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의 결과로서, 크로스컨트리 분야에서 Salomon과 Fischer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오스트리아, 독일 및 프랑스에서 Fischer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Amer/Atomic에게까지로 확대되었다. 이는 이들 시장에서 선도적인 사업자들간의 공동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당사회사들은 Fischer와 Salomon 간의 상호협력협정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키기로 했다. 특히 당사자들의 사업전략에 대한 협력과 Fischer의 독자적인 시장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

2005. 10. 13. EU위원회

독 일

연방카르텔청, 사상 최초로 허위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벌금 부과

연방카르텔청은 미국 캔사스사의 American Koch사의 계열사인 INVISTA Resins & Fibers GmbH(이하 INVISTA)에 대해 2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4년 기업결합신고서 허위의 정보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잘못된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고의적인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결합심사를 함으로써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정식 검토 절차에서 보다 정밀하게 시장 조건들을 검토했으며,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신고는 결국 거부될 것이다.

비록 허위 정보에 기초해서 기업결합 계획의 승인이 연방카르텔청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검토 시기 초기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방카르텔청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것을 인식하고 당해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 가능한 범죄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2004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1998년 8월 26일에 개정된 경쟁법 위반으로 되어서 벌금이 산정되는데, 이 경우 최고 50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최고 1백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5. 10. 20. 연방카르텔청

호 주

일본기업, 중국제 벌꿀음료를 「호주산 제품」으로 부당표시

연방법원은 일본기업인 Ixon Japan KK 및 관련 호주기업 Ikuson Trading Company Pty Ltd가 중국제 벌꿀음료를 「호주산 제품」으로 부당표시한 것에 대해 동의명령을 발표하였다.

2003년 11월 호주경쟁당국·소비자위원회(ACCC)는 동사가 일본 「Ixon클럽」 회원에 대해 「Ixon클럽 프로폴리스 드링크」를 「호주산 제품」이라 하여 판매해 왔다고 의심하여 동사를 제소하였다. 실제로는 동제품은 중국에서 제조 및 병조립되어진 것으로 대부분 중국산 벌꿀을 사용하였다. 동 음료에는 호주산 벌꿀은 약 2%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사의 동의에 의해 법원은 동 사가 벌꿀음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함으로써 1974년 거래관행법 위반을 했던 것을 인정하였다.

- Leatherwood 벌꿀을 39% 포함하고 있다(실제로는 Leatherwood 벌꿀은 약 2%밖에 들어있지 않으며 38%는 중국산 벌꿀이었다).
- Leatherwood의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28% 함유하고 있다(실제로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 주원료는 Tasmania산이다(실제 주원료는 중국산이었다).
- 호주에서 제조, 병조림하였다(실제로는 중국에서 제조, 병조림이 행해졌다).

법원은 동 행위는 오인을 초래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거래관행법 제52조에 위반하고, 또한 품질, 구성,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허위표시를 금지한 제53조(a), 제53조(eb)에도 위반한다고 인정하였다.

Ixon Club 제품이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고,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호주의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한 동 사의 제품을 호주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의금지명령이 내려졌다.

ACCC는 일본기업 Ixon의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1974년 거래관행법의 역외적용을 하였다. 동 법 제5조에는 자신 또는 호주기업 Ikuson과 그 중업원을 포함한 자회사와 대리점을 통하

여 호주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ACCC의 Graeme Samuel 위원장은, 이 결정은 호주산이 아닌 제품을 「호주산 제품」으로 표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재고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ACCC는 성장중인 수출산업의 명성과 통상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는 호주산 벌꿀의 명성과 품위 보호이다.

호주산 벌꿀, 특히 Tasmania의 Leatherwood 벌꿀은 그 품질에 대해 높이 평가받는다. 중국산 벌꿀은 항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제적 보도에서 판명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호주산 벌꿀과 같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 호주의 벌꿀업계는 만약 중국산 벌꿀과 지역벌꿀을 혼합하여 그것을 「호주산」으로 표시한다면 외국시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 염려하였다. 본 건은 고품질 호주산 벌꿀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외국 고급벌꿀 시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법원의 결정은 거래관행법에는 호주의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고객도 보호한다는, 계속해서 확장중인 세계시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강력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Samuel 위원장은 언급했다.

2005. 9. 1.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발표문

캐나다 경쟁국의 심사로 뉴클레오티드(nucleotide) 제조업자에 의한 국제적 공모에 대해 16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 부과

경쟁국은 캐나다 연방법원이 캐나다에서 뉴클레오티드의 가격카르텔 공모에 대해 합계 167만 5,000달러의 벌금을 과했다고 발표하였다. 뉴클레오티드는 스프, 소스, 향신료 및 그 밖의 식품에 사용되는 풍미증가제이다.

아지노모토 주식회사는 본 공모에 참가한 것에 대해 유죄답변을 하여, 150만 달러의 벌금이 과해졌다. CJ사도 참가에 대해 유죄답변을 하여 17만 5,000달러의 벌금이 과해졌다.

「이러한 국제적 가격카르텔은 캐나다 시장에서 가격 및 경쟁을 조작하는 것으로, 캐나다 사업자와 소비자를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 경쟁국은 위법한 카르텔 계획의 적극적인 소추를 계속할 것이다」고 경쟁국 Denyse MacKenzie 부장관은 언급했다.

본 공모는 일찍이 1992년 7월에 시작하여 1996년 8월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지노모토(일본)와 CJ(한국)의 대표자가 다른 제조업자와 연락을 취하고, 캐나다내에서의 판매도 포함한 뉴클레오티드 판매가격에 대해 동의했다.

아지노모토와 CJ 양사는 경쟁법

제45조 위반에 대해 유죄답변을 하였다. 본 조의 원래 규정은 경쟁업자와 가격카르텔 또는 시장분할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형사위반이 되며, 벌금 최고액은 1,000만 달러이다.

2005. 8. 30. 캐나다 경쟁국 발표문

덴 마 크

토요타 덴마크법인에 대해 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배제명령

2005년 5월 25일 덴마크 경쟁평의회는 토요타 덴마크 A/S가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동사의 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덴마크 경쟁법 제11조제1항 및 EU경쟁법 제82조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토요타 덴마크 A/S는 토요타의 국제적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토요타 자동차 및 예비부품을 덴마크로 수입하는 기업이다. 또한 동 법인은 토요타 인터내셔널로부터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특약권 및 수리특약을 허가하는 것이 인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2002년 유럽위원회규칙 1400호에 따라서 공급회사는 판매업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품질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수리업자는 관련 브랜드(기업)의 본사에서 허가된 수리업자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평의회는 토요타 덴마크의 행위는 잠재적으로 토요타 덴마크를 겸업하는 수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고, 허가만을 받은 수리업자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행해진다면 허가받은 수리업자의 네트워크 밀집도는 약체화 된다.

경쟁평의회는, 원고는 덴마크 경쟁법 제11조제1항(동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참조)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 및 시장차별에 방치되어 왔다고 인정하였다.

토요타 덴마크는 허가의 종료까지는 취소한다는 위협에 의해 토요타 덴마크법인은 원고에게 법정과 조정인에게 제소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말고 거래활동의 방침과 상표의 사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것에 관련하여 원고는 다액의 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토요타 덴마크로서는 판매권과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생각하였으나, 원고측은 징벌적 성격의 벌금으로서 인식하였다.

더욱이 토요타 덴마크는 토요타 덴마크에 속하는지 여부로 허가받은 수리업자를 차별하였다. 판매점이 아닌 허가수리업자는 토요타 덴마크가 소유하는 리스회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새롭게 채용된 수리업자의 점포까지의 길안내 표지의 크기의 정도에 대해서 정한 규칙은 일

관하게 허가받은 판매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리업자의 점포에만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경쟁평의회는 당해 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토요타 덴마크에 대해 허가받은 수리업자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와 취소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협박에 의해 허가받은 수리업자에 대해 부담 지워졌던 책임, 채무 및 배상금의 지불을 금지시키도록 명령하였다. 더욱이 경쟁평의회는 토요타 덴마크에 대해, 요청에 대한 기한을 짧게 하는 것으로 독립한 전문가와 중재인에게 상담하는 실현성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명령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평의회는 토요타 덴마크에 대해 허가를 받은 수리업자가 토요타 덴마크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당국의 결정은 경쟁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 5. 25. 덴마크 경쟁청 발표문

일 본

2005년도 상반기 경품표시법의 운용상황 및 소비자거래의 적정화에 대한 개요

공정취인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4월~9월)에 있어서도 경품 표시법을 엄정하게 운용하여, 위반행

위에 대해서는 배제명령을 실시하는 등의 대처를 함과 동시에, 표시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거래의 적정화에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경품표시법 사건의 처리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제명령 3건, 경고 27건, 주의 299건 등 총 32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세 총액 표시와 관련한 부당표시 사건이 많았던 작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감소했지만,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식품에 관한 부당표시에 대한 배제명령, 외식산업에 있어서의 부당표시에 대한 경고 공표나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되는 상품에 관한 부당표시에 대한 경고 공표 등 경제사회 상황에 입각해서 사건 처리를 실시했다.

주요한 처리 사례를 보면, 다이어트 식품·건강식품에 관한 부당표시(배제명령; 경품표시법 제4조제2항을 적용), 행사 판매에 대해 판매하는 상품의 부당한 이종가격 표시(배제명령), 음식점에 대해 제공하는 요리의 속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표시(경고), 식재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표시(경고), 화장지의 원재료에 관한 부당표시(경고), 슈퍼마켓에 있어서의 부당한 이종가격 표시(경고),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되는 상품에 관한 부당표시(경고), 휴대 전화기용 충전기의 기능에 관한 부당표시(경고) 등이다.

한편 소비자거래의 적정화와 관련해서도 노력했다. 먼저 차량검사 정

비에 관한 표시의 실태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했다. 최근의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완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비 공장의 수가 증가하여 고객 획득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차량검사 정비에 대해서 저렴한 요금이나 짧은 작업시간 등을 강조하는 표시, 차량검사 정비에 필요한 실제의 요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시가 보여졌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차량검사 정비에 관한 표시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했다.

둘째, 전자상거래 감시조사시스템에 의한 상시 감시를 시행했다. 일반 소비자 80명을 「전자상거래 조사원」으로서 위촉하고, 인터넷상의 광고 표시의 상시 감시를 실시해(전자상거래 감시조사시스템),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품표시법 위반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셋째, 공정경쟁규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표시의 적정화 및 과도한 경품 제공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정경쟁규약의 설정·변경 등에 관한 지도를 해오고 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있어서는 식품에 관련하는 10개 규약에 대해서 다른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문언정리 등의 필요한 변경을 인정했다.

넷째, 소비자거래 적정화 추진원(推進員) 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도부터 소비자거래 적정화 추진원을 설치해, 이 추진원의 협력을 얻어 소

비자거래의 적정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해 소비자모니터, 각종 앙케이트 조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정보수집활동 등을 의뢰하는 등 소비자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다섯째, 경품표시법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품류의 제공 행위,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사업자등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상담으로서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상담, 의약품의 원산국에 관한 표시의 상담, 경품류의 제공 한도액에 관한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2005. 10. 31.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원동기 부착 자전거 판매업자 2사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유한회사 아르잔(이하 아르잔) 및 유한회사 아크스트(이하 아크스트)의 2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2사가 판매하고 있는 전동 자전거라고 칭하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이하 전동 자전거)와 관련되는 표시가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 오인)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배제명령을 했다.

아르잔 및 아크스트는 전동 자전거

를 이른바 인터넷 옥션 사이트 또는 인터넷상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소비자에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반소비자에 오인을 주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아르잔의 경우, 2004년 4월 무렵 이후부터 「수중의 스위치 하나로 풀 전동기능과 어시스트 기능을 간단히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사이클링은 풀 전동,公道(公道)를 주행할 때는 어시스트 기능으로 수중의 스위치로 간단히 변환하므로 몹시 편리합니다」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자전거 또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서 公道를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이 표시하였다.

아크스트의 경우에도, 2004년 1월 무렵부터 2005년 7월 무렵까지의 사이, 「기능 페달 주행⇔풀 전동 주행(전혀 젓지 않는 상태로 주행할 수 있음) 어시스트 주행⇔오토 크루즈 주행(액셀을 돌릴 필요도 없음)의 4단계 전환 첨부」, 「풀 전동&어시스트 자전거」 등으로 표시하여, 마치 자전거 또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서 公道를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이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2사가 판매하는 전동 자전거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2사가 각각 판매하고 있던 상태로는 도로운송차량법으로 규정하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원동기 부착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公道를 주행할 수 없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던 취지를 공시하고, 향후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조치를 했다.

2005. 10. 27.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우츠노미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우츠노미야시가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를 해오던 중, 41사에 대해, 동 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조치 했다.

토목공사와 관련해서는 우츠노미야시가 A의 등급 자격을 지닌 사업자만을 입찰참가자로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업자 29사(이하 29사)가 관련되었다.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우츠노미야시가 A의 등급 자격을 지닌 사업자만을 입찰참가자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입찰참가업자 19사(이하 19사)가 문제되었다.

위반행위의 개요를 살펴 보면, 먼저 토목공사에서는 29사는 적어도 2001년 4월 1일 이후 우츠노미야시가 A 등급 자격을 교부한 사업자(이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정 건설공사 공동기업체를 포함)만을 대상으로 해 사후심사형 제한부 일반경쟁 입

찰, 제한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지명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수주가격의 하락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해당 공사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건축공사에서는 19사는 늦어도 2001년 4월 1일 이후부터 우츠노미야시가 A등급의 자격을 교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역시 사후심사형 제한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제한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수주가격의 하락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해당 공사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토목공사의 29사 및 건축공사의 19사에 대해 각각 해당 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자사를 제외한 각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우츠노미야시에 통지하는 한편 자사의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했다. 이러한 공취위의 권고를 사업자들이 응낙했을 때는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리판결을 실시하지만, 응낙하지 않을 때는 심

판 수속을 개시하게 된다.

2005. 10. 14. 공정취인위원회

후생연금사업진흥단 등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재단법인 후생연금사업진흥단(이하 후생연금사업진흥단) 및 루트인재팬 주식회사(이하 루트인재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각각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 오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 배제명령을 했다.

후생연금사업진흥단은 「웨르산피아」 등으로 불리는 20개의 숙박시설에 설치한 목욕탕에 마치 온천을 사용한 것 같이 표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온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도물을 가온한 다음 의약부외품인 광석 등을 사용했다. 루트인재팬 역시 「루트인」이라고 칭하는 29개의 호텔에 설치한 목욕탕에 같은 방법으로 온천수가 아닌 수도물에 의약부외품인 광석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러한 표시는 일반소비자에 대해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고 우량하다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취지를 공시하는 동시에, 향후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2005. 10. 13. 공정취인위원회